

조선시대 조경행정기구로서 掌苑署의 기능에 관한 연구

전영옥* · 양병이**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전공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A Study on the Function of "Chang-Won-Seo" as a Government Organization in charge of Landscape Architecture during Chosun-Dynasty

Jeon, Young-Ok · Yang, Byoung-E

* Ph.D.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unction of "Chang-Won-Seo" which is on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in charge of landscape architecture during Chosun-Dynasty. This study is based on the analysis of historic documents published by the government offices during Chosun-Dynasty.

The landscape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during Chosun-Dynasty was mainly undertaken by the Ministry of Industry in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specially, the government office titled "Seon-Gong-Gam" under the Ministry of Industry was in charge of landscape construction.

There were seven divisions under the "Chang-Won-Seo" and three divisions such as "Kwa-Won-Saek", "Saeng-Gwa-Saek" and "Keon-Gwa-Saek" took charge of main part of the work. "Kwa-Won-Saek" was in charge of the management of public fruit gardens and lotus ponds constructed in Han-Yang(Seoul) in order to harvest fruit and edible lotus seeds. "Saeng-Gwa-Saek" was responsible for the supply of fresh fruits to the royal family and the government offices while "Keon-Gwa-Saek" took charge of supplying them with dried fruits. In view of the responsibilities of three divisions, it is concluded that the function of "Chang-Won-Seo" was not to construct and manage the pleasure garden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but to manage the public fruit gardens and to supply the royal family and the government offices with fresh and dried fruits.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조선시대 조경문화는 민간정원이나 궁궐에 조성되었던 궁원들 외에도 官營의 樓亭이나 연못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한양을 비롯하여 지방 수령을 중심으로 고을 단위로 조성되었던 官營의 園林들은 그 고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던 명소로서 이용되었다. 그러나 문헌연구와 유적연구를 병행하여 하는 조경사 연구에서 官營의 園林들은 도시화로 인하여 많은 유적이 훼손되어 있어 그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한, 민간정원을 연구할 경우 조성자, 관리자, 이용자가 대부분 한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원 양식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 안에 내재된 조성목적이나 디자인 철학이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정원과는 달리 官營園林의 경우는 조성목적 또한 실리적인 경우가 많았을 것이며, 관리 또한 구체적 수단이 필요하고, 이용자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고을주민들이 된다. 이 때문에 실제 官營의 樓亭, 연못, 수림등이 한양을 비롯한 여러 고을에 조성되었을 때에는, 官에서 조성하게 된 배경, 실제로 직접 官에서 경영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에 관한 연구가 그 양식이나 이용상황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연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할 수 있겠다.

조선시대 법전에 명시된 조경관련 행정기구¹⁾들은 官營의 樓亭, 연못, 수림을 조성하고 계속된 관리와 보수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工曹내 掌苑署의 경우 苑圃, 화초, 果物의 관리를 맡았던 부서로 조선시대 여러 법전에 명시되어 있어 조경과 관련된 가장

확실한 행정기구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掌苑署의 하위부서나 조경관련 행정조직으로서 구체적 기능이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유적연구에 앞서 官營의 조경문화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조경과 관련된 조선시대 행정조직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사료들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조경제도내에서 조경행정기구인 掌苑署의 구체적 기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연구방법

조선시대 조경관련 행정조직이나 掌苑署와 같은 기구에 관한 연구는 법전을 비롯한 조선시대 각 관청에서 발행한 행정문서 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史料에 대한 문헌분석을 하는 역사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조선시대 조경행정기구로서 掌苑署의 기능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연구에서 주로 분석된 문헌인 규장각 소장의 『掌苑署謄錄』은 掌苑署의 위치, 官制, 하위부서의 구성 및 기능, 재정등에 관한 기록으로 掌苑署에서 기록하여 온 문서에 새로운 사항을 덧붙여 다시 만든 것이다. 작성년대는 문서에는 甲寅年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으나, 官制에 표기된 正職이 『續大典』 이후 것이며 惠慶宮, 奎章閣등에 관한 사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정조 18년(1794년)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卷末에 “옛 책이 낡아서 훼손되었으니 지금 임오년 12월에 다시 쓴다(舊冊子年久弊損故今壬午十二月日改書事)”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이 등록은 후에 다시 베껴 쓴 듯하다²⁾. 그 내용이 掌苑署 자체의 업무에 관한 기록이므로 『經國大典』과 같은 법전이나 工曹에 관한 일반

1) 조경제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다른 연구에 부수적으로 관리제도에 관해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조경제도를 중심 주제로 삼은 것은 고려시대의 조경관제로부터 조선시대 법전에 나타난 조경관련 기구와 법조문을 검토한 이유직(1991, 1992)의 논문이 있다. 이유직(1992)의 연구는 『經國大典』을 비롯한 법전을 중심으로 조경을 담당하였던 중앙의 국가기관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로 볼 수 있다.

이유직(1991), “『經國大典』을 통한 조선시대 조경관련제도의 고찰,” 『밀양전문대학 논문집』, 25.

_____(1992), “조선시대 조경제도의 법적측면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2).

2) 서울대학교 도서관(1982), 『奎章閣韓國本朝書解題 5집』,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200.

적 사항을 기록한 謄錄³⁾에서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掌苑署謄錄』의 전체 목록은 基址家舍, 官制, 各色分定式, 員役額數, 褒貶式, 各道詳定式, 諭新式, 供上式, 物膳進上式, 進排式, 捧上式, 作米式, 一年應上下式, 遂朔應上下式, 隨時上下式, 堂郎溯用式, 分兒式, 果園色, 生果色, 乾果色, 作米色, 堂務色, 工房色, 稅錢一年應上下式, 禮木式, 署中什物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基址家舍는 관사의 위치와 건물의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各色分定式에서는 하위부서의 직제와 대략적 기능을 기록하였다. 各道詳定式에서는 堂苑署에서 각도에 분정한 과일의 양을 기록하였고, 諭新式, 供上式, 物膳進上式, 進排式에서는 종묘를 비롯하여 궁궐내 각殿과 주요 관청에 필요한 과물의 진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捧上式에서는 한양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 東山의 이름과 그곳에서 거두어 드린 세전을 기록하였고, 果園色, 生果色, 乾果色, 作米色, 堂務色, 工房色에서는 각 부서의 기능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문헌

표지	편찬년대	편찬자	기록형태	내용
濟川事實	1760	洪啓禧	筆寫本	濟川司에서 시행한 도성내 河渠수리 및 하천변보호방법등에 관한 기록, 권말에 濟川節目 수록.
掌苑署謄錄	1794	掌苑署	筆寫本	掌苑署의 하위부서의 직제 및 기능, 신체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기록.
京畿各邑堤堰都結成冊	1848	京畿監營	筆寫本	道내 30개군의堤堰에 관한 자세한 기록.
京畿監營各房重記	1886	京畿監營	筆寫本	京畿監營에서 각房에 속해 있는 각종물품에 관한 기록, 工房色의 경우 건물의 관리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음.

*奎章閣소장.

3) 工曹에 관한 기록으로奎章閣소장의 『公中謄錄』(구한말 고종대)과 水部謄錄 (1878-1889)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그 내용이 工曹 전체의 총괄적인 기록이어서 山澤司, 掌苑署(1882년, 고종19에 폐지), 濟川司등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찾기 힘들었다. 그러나 조경과 관련하여 자세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古文獻에 관한 기초 서지사항은 다음을 참고로 함.

서울대학교 도서관(1993),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4집』,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奎章閣韓國本圖書解題 5집』,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5) 『太宗實錄』卷9 5年 3月 內申條.

『掌苑署謄錄』외에 본 연구의史料로 채택된古文獻에 관한 기초 서지사항을 살펴 보면 표1과 같다⁴⁾.

II. 조경과 관련된 행정조직

1. 중앙의 행정조직

조선시대 조경과 관련된 중앙의 행정조직은 주로 工曹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工曹의 업무는 山澤, 工匠, 土木, 營繕, 陶冶등을 관장하였으며 그 밑에 여러 屬司와 屬衙門을 두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屬司로는 營造司, 山澤司, 政治司등이 있었다. 營造司는 宮室, 城池(성곽과 해자), 公廄(관아), 屋宇, 土木, 工役등의 일을 맡았다. 山澤司는 山澤(산림, 하천, 연못), 津梁(나루터와 다리), 苑圃와 초목의 種植, 柴炭과 木石의 取伐, 堤堰(저수지), 屯田, 漁鹽등의 일을 맡았다. 政治司는 丘工의 制作, 緒治(수리), 陶鑄(도기제조와 쇠의 주조)등의 일을 맡았다⁵⁾. 이 외에 工曹 산하에는 영조 36

년(1760)에 도성내 개천의 막힌 곳을 뚫고 준설작업을 시행하는 濬川司가 설치되었고, 舟橋 및 兩湖漕運등을 맡은 舟橋司가 뒤늦게 분리되었다. 工曹의 屬衙門으로는 의대와 내부의 財貨金寶등을 관장하던 尚衣院, 土木營繕을 관장하던 繕工監, 苑圃 꽃과 과일나무를 관장하던 掌苑署, 종이를 만드는 업무를 관장하던 造紙署, 기와와 벽돌을 만드는 瓦署가 있었다⁶⁾.

工曹 소속으로 조경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던 부서로는 山澤司, 繕工監, 濬川司, 掌苑署등을 들 수 있다. 工曹는 중앙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곳이므로 山澤司, 繕工監, 濬川司, 掌苑署는 주로 한양의 조경업무를 맡았던 곳으로 볼 수 있다.

山澤司의 조경과 관련된 업무는 山澤(산림, 하천, 연못), 苑圃와 초목의 종식, 堤堰(저수지)에 관한 일을 들 수 있으나, 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직제외에 자세한 문헌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繕工監은 궁전 내부와 각 관청의 수선이며 差備門안에서 쓰는 그릇의 준비와 내빙고의 供上을 맡았으며, 그 관사를 서부 餘慶坊에 두었다⁷⁾. 『朝鮮王朝實錄』을 보면, 실제 궁궐의 담을 쌓고, 궁궐을 수리하고, 공주와 君들의 집을 수리하는 등 한양내의 실제적인 土木營繕을 주관하는 부서였다⁸⁾. 특히 조경업무와 직접 관련된 토목공사였던 慕華樓의 南池조성의 경우, 判恭安府事 朴子青이 실제 繕工少監 洪理와 함께 공사를 감독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⁹⁾. 이로 보아 繕工監에서 궁궐의 수리 뿐

아니라, 연못이라든 지 기타 토목공사가 필요한 조경시설의 조성을 맡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濬川司는 도성내 하천을 관리하고 정비하던 곳으로서 그 관사를 중부 長通坊에 두었다¹⁰⁾. 태종대와 세종대 10여년에 걸쳐 도성내 開川의 보수를 완비하였다. 그러나 이후 관리의 혀점을 보여 큰 비만 오면 물이 넘쳐 도성내에 홍수피해가 생겨나게 되었다. 숙종 36년(1710)에 溝渠(도량)와 개천을 한번 준설하게 되었으나 이로 미흡하여, 영조 36년(1760)에 대대적인 개천 준설작업과 교량의 보수작업을 시행하였다¹¹⁾. 이러한 대역사를 마치면서 상설 기관으로서 工曹산하에 濬川司를 두게 되었고 여기서 하천의 준설업무와 하천바닥이 높아지는 주원인이 되는 하천주변의 개간을 막기 위한 하천변의 植木과 이에 대한 관리를 겸하여 맡았다¹²⁾.

工曹 소속은 아니지만 조경과 관련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관제로는 戶曹 소속의 司圃署를 들 수 있는 데, 이는 園圃와 채소에 관한 일을 맡았던 곳으로 세조 12년(1466)에 工曹 소속의 沈藏庫가 司圃署로 개편되면서 戶曹소속으로 변경되었던 곳이다¹³⁾.

2. 지방의 행정조직

지방의 조경관련제도는 주로 監營이나 각 고을의 수령을 중심으로 관아의 工房이 맡고 있었다. 관할내의 산림을 보호하고 건물을 새로 만

6) 서울대학교 도서관(1982), 前揭書:176.

7) 漢京識略: 關外各司 繕工監條 (권태익譯(1981), 『漢京識略』, 서울:탐구당:145)

“繕工監在西部餘慶坊 國初建掌土木營繕 -中略- 時御所殿宮內及各司公廡修補 差備門各項器用造作 內冰庫供上”

8) 中宗實錄: 卷6 3年 6月 甲午條, 卷44 17年 3월 戊午條.

『明宗實錄: 卷5 2年 1月 王午條.』

9) 太宗實錄: 卷15 8年 5月 乙卯條 “司憲府劾判恭安府事朴子青 子青率繕工少監洪理等 監督慕華樓南池之役.”

10) 漢京識略: 關外各司 濬川司條 (권태익譯(1981), 前揭書:117), “濬川司在中部長通坊 掌疏濬都城內川渠”

11) 손정목(1988), 『조선시대도시사회연구』, 서울:일지사:366-374 참조.

12) 하천의 바닥이 높아지는 원인이 자연 홍수로 인한 것보다 하천 주변을 개간하는 등 민간인들의 불법 하천사용으로 인한 경우가 더 많아 이를 금지시키기 위한 濬川節目을 전문 26조로하여 강행, 반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濬川司의 구성, 임무, 소관구획, 하천壩塞의 원인과 대책, 위반시 처벌규정 및 보수등을 통괄하고 있다(『濬川事實』, 『濬川節目』).

13) 이유직(1992.7), “조선시대 조경제도의 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2):81-83 참조.

들거나 보수하는 일, 堤堰(저수지)이나 蓮池를 조성하고 관리·보수하는 일을 工房이 맡아 하였다. 丁若鏞이 지은 『牧民心書』의 工典六條에 따르면 工房에서 맡은 일이 山林, 川澤, 繕席(官營건물의 보수), 修城, 道路, 化作(공업의 육성)의 6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지방의 조경관련업무로는 山林과 川澤의 관리와 官營건물의 보수를 들 수 있다.

山林에 관한 내용으로는 조선시대의 산을 나라가 禁養하며 보호하는 封山과 개인이 보호하는 私養山으로 나누고, 주로 소나무의 벌채를 금하고 있다¹⁴⁾.

川澤에 관한 내용으로는 농경의 근본이 되는 관개시설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냇물이 흘러서 고을을 지나가면 渠(도량)를 파고 물을 끌어 들여 논밭에 대도록 하며, 관개시설 중 작은 것은 池沼라 하고 큰 것을 湖澤이라 하며 절수를 위하여 제방을 쌓도록 하였다. 그 밖에 연못에서 나오는 물고기, 자라, 연, 마름, 부들등도 官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¹⁵⁾. 그러나 관개시설의 관리에 있어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여기에 정자등을 설치하여 지방 고을에서 경승지로 이용하는 것도 川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1848년 경기감영에서 작성한 『京畿各邑堤堰都結成冊』을 보면 도내 30개 고을의 堤堰(저수지)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기록된 堤堰의 수는 233개처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중 폐기된 堤堰이 30개라고 하니 그 당시 경기도에서 관리하던 堤堰의 총수는 203개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기록에는 堤堰의 위치와 둘레, 가로, 세로, 수심, 이익을 보는 전답등과 함께 모든 堤堰에 1848년

이전에 심겨졌던 나무의 수와 1848년에 새로 심은 나무의 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 예로 楊州의 경우 1848년 이전에 심었던 나무는 총 5132주이며, 1848년 당시에 심은 나무는 총 303주였다¹⁶⁾. 이 나무들은 제방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심겨졌어도 이들이 이루는 경관은 堤堰의 조경적 용도로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표 2〉 1848년 당시 양주지방 堤堰의 식수현황

楊州 / 堤堰명	1848년 이전에	1848년 당시에
	심은 나무(株)	심은 나무(株)
邑內面 蘆池	702	80
蓮池 宙字堤堰	800	30
泉川面 馬乙池	1070	23
都月池	710	40
苞夜面 助乙池	920	50
海等村面 王倫池	930	80

(자료출처: 京畿各邑堤堰都結成冊)

마지막으로 繕席에 관한 내용으로는 노후한 관청의 건물을 보수하는 것은 물론 청사에 꽃과 나무를 가꾸는 것을 선비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고을 수령으로서 누각이나 정자를 관람을 위한 城邑의 중요한 시설로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⁷⁾. 이로 미루어 工房에서 지방 행정관사외에 경승지에 조성하였던 누정의 관리도 맡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4) 丁若鏞(1818), 『牧民心書』, 노태준 譯解(1993), 『新譯 牧民心書』, 서울:홍신문화사:302-305. 山林에 대한 국가적 관리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동수(1994), "한국 전통도시조경의 장소적 특성에 관한 연구-전통 도시숲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86-208을 참조.

15) 丁若鏞(1818), 『牧民心書』, 노태준 譯解, 前揭書:314-315. "川流逕縣 繕渠引水 以溉以灌 與作公田 以補民役 政之善也 小則 池沼 大則湖澤 其障曰陂 亦謂之堤 所以節水."

16) 京畿監營(1848), 『京畿各邑堤堰都結成冊』,奎府閣소장 筆寫本.

17) 丁若鏞(1818), 『牧民心書』, 노태준 譯解, 前揭書:321.

III. 掌苑署의 기능

1. 연혁 및 직제

조선시대 들어와 掌苑署의 전신인 上林園이 태조 3년(1393)에 설치되었다¹⁸⁾. 기록에 의하면, 이 때 東山色을 上林園으로 개편하였다고 하나 東山色과 上林園의 구체적 기능에 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世宗實錄』의 기록을 보면 上林園의 기능에 관하여 과실나무와 꽃, 새와 짐승을 맡아 다스리는 곳이라고만 하고 있다¹⁹⁾.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통하여 단편적이나마 上林園의 기능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살펴 보기로 하겠다.

『朝鮮王朝實錄』에 실린 上林園에서 관한 내용을 보면, 도성내 과원이 좁아서 강화부에 까지 과원을 만들어 柑子, 유자, 석류, 모과등 각종 과일나무를 재배하였고, 上林園에서 심은 배와 감나무 열매의 수확량에 따라 각 고을에서 바치는 수량을 조절하기도 하였다²⁰⁾. 藏義洞에서는 닥나무를 심어 명나라에 바칠 表箋文용지를 제조하기도 하였다²¹⁾. 또한 도성 四川에 소나무 대신 밤나무를 심기 위하여 밤나무종자를 上林園으로 보내어 기르도록 하였다²²⁾. 그밖에 대마도에서 보낸 공작을 上林園에서 기르도록 하기도 하고, 큰 딱새의 새끼를 상서로운 일이라 하여 上林園에서 기르다 놓아 주라는 기록도 있으며, 제주도에서 바친 한꼭지에 6개 달린 석류와 대마도에서 공물로 바친 木芙蓉과 楊梅木을 심어 기르도록 하기도 하였다²³⁾.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掌苑署 이전의 上林園

은 도성내와 강화에 과원을 두고 실용수를 재배하여 왕실에 필요한 과물을 조달하고, 도성에서 필요한 수목의 種植, 그밖에 異卉奇獸를 기르는 일을 맡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上林園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果園외에 왕실의 苑圃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명칭 또한 上林苑(苑圃)²⁴⁾으로 통용되었다.



(그림 1) 「首善全圖」에 그려진 上林苑
(木版本, 金正浩 作, 1840년대)

『世宗實錄』을 보면 思政殿과 廉會樓를 중수할 당시 上林苑으로 移御하였다는 기록²⁵⁾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규모가 커던 것으로 보인다. 『東國輿地備考』 京都苑圃條에는 '上林十景'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아름다운 경관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⁶⁾. 이 上林苑은 184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首善全圖」에도 慶熙宮(1616년 창건) 남쪽에 그려져 있어 제도로서 上林園이 없어진 후에도苑圃는 도성내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을 알 수

18) 《太祖實錄》卷6 3年 7月 戊申條 “改東山色 爲上林園.”

19) 《世宗實錄》卷30 7年 12月 庚午條 “今 上林苑掌治鳥獸花果之事 不能專心致志.”

20) 《世宗實錄》卷41 10年 9月 戊辰條, 卷42 10年 12月 內戌條.

21) 《世宗實錄》卷42 10年 12月 內戌條.

22) 《世宗實錄》卷117 29年 8月 己巳條.

23) 《太宗實錄》卷12 6年 9月 壬午條, 《世宗實錄》卷108 27年 6月 己酉條, 卷69 17年 9月 己丑條, 卷116 29年 5月 己酉條.

24) 《朝鮮王朝實錄》에서는 상림원의 명칭이 '園', '苑', '院' 3자가 혼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기구로서의 상림원은 '園'으로 원유로서의 상림원은 '苑'으로 통일하여 쓰기로 한다.

25) 《世宗實錄》卷43 11年 1月 內辰條.

26) 《東國輿地備考》 京都苑圃 上林十景 “觀豐春耕, 望春聞鶯, 天香春晚, 魚水泛舟, 遊遙流海, 喜雨賞蓮, 清心尋月, 觀德楓林, 嘆花試土, 凌草暮雪”.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堂苑署의 전신인 上林園은 조경관련 행정기구이면서 동시에 실제 관리하던 苑圃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上林園은 세조 12년(1466)에 堂苑署로 개칭되어 工曹내 屬衙門으로서 계속해서 苑圃 및 花초와 과일등의 관리를 맡았다. 이후 堂苑署는 燕山君 9년(1503)에 잠시 폐지되었다가, 中宗 원년(1506)에 다시 두었고, 高宗 19년(1882)에 완전히 폐지되었다²⁷⁾.

堂苑署는 북부 鎮長坊에 그 관사를 두었으며 官制 중 正職은 조선시대 초기에 있던 堂苑(정 6품)을 없애고 奉事(종 8품) 1명을 증가하여, 『堂苑署職錄』이 쓰여진 1794년에는 堤調 1명, 別堤 2명, 奉事 1명을 두었다.

堂苑署안에는 하위부서로 각각 果園色, 奴婢色, 生果色, 乾果色, 作米色, 工房色, 堂務色을 두었다. 이중 堂苑署의 주요 기능인 苑圃 및 花果의 관리는 果園色에서, 果物의 조달 및 관리는 生/乾果色에서 맡고 있었다. 이 세부서가 堂苑署의 주요 업무를 分掌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作米色은 거두어 드린 쌀을 관리하였고, 工房色은 堂苑署에서 소용되는 鋪陳(바닥에 까는 것)과 器皿(그릇), 署내 정원의 청소 등을 맡고, 堂務色은 기타 행사를 주관하거나 잡무를 맡고 있었다²⁸⁾. 奴婢色은 1794년경에는 이미 없어진 상태였다.

2. 果園色의 기능 - 苑圃와 花果의 관리

果園色에서 苑圃의 관리는 東山別監²⁹⁾ 9명이 담당하여 내외 각 東山과 한양내의 4곳의 蓼池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³⁰⁾. 『堂苑署職錄』 捧上秋에는 각각의 東山에서 거두어 들

인 稅錢 및 果物의 내역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 東山의 관리는 주로 세입과 果物의 생산에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果園色에서 관리하던 각 東山은 다음과 같다³¹⁾.

〈표 3〉 果園色에서 관리하던 東山

고온명	東山名
漢城府	中學東山, 廣化坊東山, 漢江田, 龍山田
	重興東山, 道城東山, 樂天亭東山, 廉平山東山,
楊州*	長興舊東山, 天寶山東山, 伐里東山, 海茅村東山,
	上加五里東山, 下加五里東山, 長位北邊東山,
	鶴峴東山, 舊陵新陵東山*.
通計	榮山東山
富平	晋頂里東山, 藝串東山
交河	添添東山
高陽	折里東山
江華	仙源東山, 古阜東山
加平	東山
南陽	東山
開城府	東山
達安	東山

* 양주의 伐里東山, 海茅村東山, 上加五里東山, 下加五里東山, 長位北邊東山, 鶴峴東山, 舊陵新陵東山 7개곳은 香肅王(1781-1811)에 內苑에 소속됨.

(자료출처: 堂苑署職錄 卷上秋)

그런데 堂苑署에서 관리하던 東山은 그 성격이 연회와 감상의 대상이 되었던 정원이라기보다 실용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果園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곳에서 거두어 드리는 稅錢과 果木의 관리가 果園色의 주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果園色의 「應行節目」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다³²⁾. 각처 東山에서 거두어 드린 稅錢과 곡물을 자세히 기

27) 이유직(1992. 7), 前揭論文:84.

28) 堂苑署職錄에는 作米色, 工房色, 堂務色의 업무분장이 관해서는 상세하게 명시한 것이 없어, 職錄의 뒷부분에 기록된 各色의 「應行節目」을 참고로 하였다.

29) 别監이란 일반적으로 궁내의 잡역에 동원된 奴婢를 지칭한다. 堂苑署소속의 别監은 苑內의 花果, 飼獸, 飼養에 따르는 잡무에 종사하는 기술자라 할 수 있다. (이유직(1992), 前揭論文:82)

30) 堂苑署職錄: 各色分定式 果園色條 “東山別監九人 內外各東山及四庭蓮池.”

31) 『堂苑署職錄』 捧上秋(내외 東山의 稅錢) 적혀 있음.

32) 『堂苑署職錄』 뒷부분에 나오는 果園色의 「應行節目」에는 각 8조항이 나오는데 이중 각 東山의 수입과 과목의 관리와 관련된 조항이 3개항이며 화분과 관련된 조항이 1개항. 그밖에 노비의 관리나 관원의出行시 또는 경비의 시원등이 기록되어 있다.

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掌苑署 내 각종 果木을 매년 배양하고 果木과 화초의 종자를 東山에서 직접 가져 오도록 규정하고 있다³³⁾. 또한 東山의 果實의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이 발견되면 이후 果實이 잘 열리도록 하여 이송하는 것이 果園色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³⁴⁾.

다음 果園色에서 관리하던 4곳의 蓮池는 각각 東大門外池(東池), 於義洞池, 南大門外池(南池), 盤松池(西池)였다³⁵⁾. 한양에는 성내외에 나라에서 관리하던 蓮池가 여러개 있었다. 특히 西池라 불리우던 盤松池는 天然亭이 세워지고 경기감영이 설치되어 한양에서 연꽃 구경하는 경승지로 이용되었으며, 그 형태는 전형적인 方池圓島形식을 갖추고 있었다. 한양의 동편에 있던 연못은 경모궁 앞 蓬池 1개소, 於義洞 蓬池 1개소, 동대문 밖에 1개소(東池)가 있었다. 南池는 남대문 밖에 있던 연못인 데 석축을 하고 연꽃이 무성하여 老會가 열리는 등 아름다운 경관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찾던 곳이었다³⁶⁾. 이중 경모궁 앞 蓬池를 제외한 4개소를 果園色에서 관리하였다.

그런데 果園色에서 하던 蓬池의 관리는 연못의 경관유지를 위한 관리라기보다 주로 그 곳에서 나는 연밥, 연잎, 연근의 수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掌苑署賸錄』을 보면 4곳의 蓬池에서 나오던 연밥의 수확 및 진상 내역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남아 있다. 4곳의 蓬池에서 수확된 연밥은 궁궐내 각殿과 세자궁등에 진상되었고 왕실에서 쓰던 약용의 연밥(50房), 연잎(700葉)은 4池에서 1년씩 돌아 가면서 거두고, 내의원에서 쓰이는 연근은 필요할 때 곧바로 봉납하도록 하였다³⁷⁾. 그러나 연못의 준설이라든가, 植木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4곳 蓬池 중 西池에 관한 기록이 1886년 경기감영에서 기록한 『京畿監營各房重記』에 남아 있어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京畿監營各房重記』에 따르면, 경기감영 바로 옆에 있던 한양의 西池(盤松池-서대문 밖)를 새로이 준설한 기록이 계속해서 여러번 나온다³⁸⁾.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掌苑署는 도성내 4곳의 蓬池를 관리하였다고는 해도 주로 연밥의 수확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실제적인 蓬池의 준설 및 경관관리는 西池의 경우는 경기감영의 工房에서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掌苑署의 역할이 東山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현대적 조경의 의미에서 蓬池를 관리했다기 보다 실용적인 목적에서 연밥의 수확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果園色의 東山別監은 泛菊會(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국화를 술위에 띄워 마시는 잔치)에서 필요한 국화를 길러 진상하기도 하였다³⁹⁾. 『掌苑署賸錄』 供上式의 기록에 따르면, 대전, 왕대비전을 비롯한 각殿과 규장각, 승정원등에 泛菊會에 필요한 국화 26盆을 진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生/乾果色의 기능 - 果物의 조달

掌苑署에서는 각종 과물의 조달과 관리도 맡고 있었는데, 이들 생과와 건과의 조달과 관리는 生果色과 乾果色의 기능이었다. 生果色에서는 배, 밤, 은행, 홍시, 모과, 석류, 유자, 柑子, 굴의 조달과 관리를 맡았고, 乾果色에서는 곶감, 호도, 잣, 대추, 말린 황밤, 개암, 비자의 조달과 관리를 맡았다⁴⁰⁾. 새로 나온 음

33) 掌苑署賸錄: 果園色 “案付各處東山收稅錢文穀物依階錄捧上後 會計”, “署中 各種果木年年十分培養 而町種果木花草 使外東山直採納事”.

34) 掌苑署賸錄: 果園色 “各處東山果實摘奸後 從貯或冊移送該掌事”.

35) 掌苑署賸錄: 供上式 “青蓮房 東大門外池 於義洞池 南大門外池 盤松池 各隨其結實使各其池直摘納.”

36) 전영옥 · 양병이(1994. 7), “조선시대 한양에 조성된 官營의 蓬池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2(2):56-62 참조.

37) 掌苑署賸錄: 供上式 “青蓮房 東大門外池 於義洞池 南大門外池 盤松池 各隨其結實使各其池直摘納.” “御藥所用蓮房伍拾房 及蓮葉柒百葉 四池直一年式輪回直納 于內院院蓮根則隨用進排事.”

38) 京畿監營各房重記: 工房色 金等箕晚時修改秩 “盤松蓮池 新疏溶”. 中替重修秩, 金等輔根時重修秩에도 같은 기록이 남아 있음.

39) 掌苑署賸錄: 供上式 “菊花東山別監養花泛菊九月初八日.”

식물을 神命에게 올리기 위해 종묘에서 쓰이는 각종 과일(虧新)과 각殿과 세자궁, 중궁전, 빈궁전등에 대일 쓰이는 乾果와 生果를 공급하고(供上), 각殿의 탄신일날, 정월 초하루, 立春, 秋夕과 같은 때 특별히 진상하는 과일을 공급하였다(物膳進上). 그 밖에 내의원의 약용 과물, 老所, 三軍門(어영청, 금위영, 훈련도감),

摠戎廳에 진상하는 果物을 담당하였다(進排)⁴¹⁾.

堂苑署에서 조달해야 하는 여러가지 과일은 果園色의 창고지기(庫直) 1명이 生果色의 창고지기를 겸하였던 것으로 보아⁴²⁾, 果園色이 관리하던 東山과 蓮池에서 생산된 각종 과일과 연밥, 연근등을 잘 관리하여 生果色에서 果物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던 것을 알 수

〈표 4〉 生果의 각도에서 분담한 물량

道 \ 生果	배	홍시	모과	석류	유자	생밤*	운행*
경기						2석14斗	
충청	4773개	4627개	346개	786개		11석14斗	9斗
경상	1515개	1207개	53개	10개	145개	7석 4斗	1斗
전라	3394개	3658개	571개		669개	5석14斗	
황해	916개					9斗	
강원	700개					1석11斗	
함경	4361개						
평안	220개						
계**	15879개	9492개	970개	796개	814개	30석 6斗	10斗

* 밤과 운행의 양은 石, 斗, 升, 合, 緩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편의상 石, 斗까지만 기록.

** 堂苑署職錄에서는 1石이 15斗로 계산되어 있음.

〈자료출처: 堂苑署職錄 各道詳定式〉

〈표 5〉 乾果의 각도에서 분담한 물량

道 \ 乾果	호도*	대추*	황밤*	개암*	잣*	곶감
경기						
충청	1斗	15석 9斗	13斗		14斗	55첩
경상	6석11斗	1석 2斗	1석11斗		13斗	277첩
전라	3석 2斗	12석 7斗	2석13斗		2斗	63첩 6관
황해				4석 4斗	3석 6斗	
강원	4斗	2斗		8斗	8석 7斗	
함경						
평안		2석 2斗				
계**	10석 3斗	29석 5斗	5석 7斗	4석12斗	15석14斗	395첩 6관

*호도, 대추, 황밤(말리어 껌질을 벗긴 빛이 누른 밤), 개암, 잣의 양은 石, 斗, 升, 合, 緩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편의상 石, 斗까지만 기록.

** 堂苑署職錄에서는 1石이 15斗로 계산되어 있음.

〈자료출처: 堂苑署職錄 各道詳定式〉

40) 堂苑署職錄: 各色分定式 生果色 條 “生梨 生栗 銀杏 紅柿 木果 石榴 柚子 柑子 各橘”, 各色分定式色 乾果條 “乾柿 胡桃 柏子 大棗 黃栗 榆子 檳子”.

41) 堂苑署職錄이 기록된 내용에 따라 堂苑署의 과물조달 형식을 분류하였다.

42) 堂苑署職錄: 各色分定式 果園色 條 “庫直一名 生果色庫直兼.”

있다. 그 밖의 물량은 각도에서 분담하여 조달하였다. 각도에 상정된 물량중, 생밤을 제외할 경우 경기도에 상정된 果物이 없는 것은 掌苑署에서 직접 관리하던 내외 東山이 주로 경기도에 위치한 탓으로 볼 수 있다.

『掌苑署臘錄』各道詳定式에 나타난 각 도에서 분담하여 조달하였던 과일의 양은 표4, 표5와 같다.

IV. 결론

지금까지 조선시대 조경관련 제도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살펴 본 후, 중앙 행정기구로서苑圃와 花果의 관리를 맡고 있었다고 법전에 명시된 掌苑署의 구체적인 직무상 분담 및 기능에 관하여 『掌苑署臘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조경관련 제도는 중앙과 지방 모두 工曹(중앙) 및 工房(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중앙의 조경관련 기능을 맡고 있었던 행정기구로는 工曹내 山澤司, 繕工監, 濟川司, 掌苑署등을 들 수 있다. 山澤司에서는 山澤,苑圃와 초목의 종식, 堤堰(저수지)에 관한 일을 맡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직무상 기능에 관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繕工監은 도성내 궁궐의 수리 뿐 아니라, 연못을 開鑿하는 등의 토목공사를 맡아 지휘, 감독하는 부서로서 실제 도성내 조경시설의 조성을 맡고 있었다. 濟川司는 도성내 하천을 관리하고 정비하던 곳으로 후대에 와서 하천의 준설이 필요하게 되자 설치된 기관이었다. 이곳에서는 하천 주변의 개간을 막기 위한 하천변의 식목과 이에 대한 관리를 겸하고 있었다.

지방 고을의 工房에서의 조경관련 기능은 중앙과 같이 여러부서가 직무를 分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고을 수령을 중심으로 山林과 川澤의 보호 및 관리, 樓亭을 포함한 官營 건물의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川澤의 관리에 있어서는 주로 관개시설의 조성 및 관리가 중심이 되고 있었으나, 堤堰(저수지)이

조성된 뒤에는 그 주변에 제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 심은 나무와 연못의 물이 어우러져 고을의 경승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정자를 세우기도 하였다. 官營건물의 관리는 감영을 비롯한 동현의 花木을 가꾸는 일과 城邑의 주요 시설로서 觀賞을 위한 樓亭을 관리해야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조경관련 제도내에서 掌苑署의 구체적인 기능에 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掌苑署의 전신인 上林園은 도성내와 강화에 果園을 두고 실용수를 재배하여 왕실에 필요한 果物을 조달하고, 도성에서 필요한 수목의 種植, 그 밖에 異卉奇獸를 기르는 일을 맡아 하던 곳이었다. 上林園은 실용수의 재배를 위한 果園외에 임금이 移御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갖춘 같은 이름의 王室苑圃를 갖추고 이곳에서 異卉奇獸를 길렀으며, 그 곳은 '上林十景'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을 갖추고 있었다. 이로 보아, 上林園은 果園의 관리 및 果物의 조달기능외에 아름다운 경관을 갖춘 같은 이름의 王室苑圃를 관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세조 12년(1466)에 掌苑署로 개칭되었고 그 하위부서로 果園色, 生果色, 乾果色, 作米色, 工房色, 掌務色, 奴婢色을 두었다. 掌苑署의 주요 기능인苑圃 및 花果의 관리는 果園色에서, 궁궐 및 관청에서 필요한 果物의 조달은 生/乾果色에서 맡아 이 세부서가 掌苑署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果園色에서는 東山別監을 두어 내외 東山과 한양내 4곳의 蓮池를 관리하였으나, 여기서 관리란 果物과 연밥의 수확 및 세전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의미하였다. 果園色에서 수확된 生果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果園色의 창고지기가 生果色의 창고지기를 겸하여 果物의 조달에도 차질이 없게 하였다. 生/乾果色에서 조달하던 果物도 성내 및 경기도 일대에 있던 東山에서 수확된 果物외에 모자라는 것은 각도에 분담하여 거두어 드렸다.

이와 같은 堂苑署의 기능은 법전에 명시된 苑圃와 花果의 관리가 현대적 의미의 조경과 같은 경관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아니라, 주로 東山이라고 하는 果園에서의 果物의 수확과 蓮池에서 연밥의 수확을 통하여 궁궐 및 관청에 果物을 조달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었다. 堂苑署의 역할범위는 조선시대 실용 정원의 대표적 양식인 果園에 집중되었다. 실제 蓮池와 같은 조경시설물의 조성은 繕工監에서 주관하였고, 西池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연못의 준설과 같은 조경적 관리는 시설물 주변의 관청에서 맡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는 중앙의 조경관련 행정조직으로서 堂苑署와 관련하여 山澤司, 繕工監 각각의 구체적인 기능을 파악하여 조선시대 官營의 누정 및 蓮池, 수림등의 설계와 조성 및 조경적 관리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 경우는 중앙의 관제에 많이 따르게 되겠지만 여러부서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고을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감영기록 및 기타 지방 문서를 통하여 각 고을 단위로 조성된 官營의 조경시설물의 설계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引用文獻

- 『京畿各邑堤堰都統成冊』(1848), 奎章閣 소장 筆寫本.
- 『京畿監營各房重記』(1886), 奎章閣 소장 筆寫本.
- 『公卿賛錄』(고종대), 奎章閣 소장 筆寫本.
- 『東國輿地備考』(고종대), 『조선시대 私撰邑誌』 권1(1989, 影印本).
- 서울대학교도서관(1993), 『奎章閣韓國本圖』解題 4집,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 (1982), 『奎章閣韓國本圖』解題 5집,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 孫曉暉(1988), 『조선시대 도시사회연구』, 서울:일지사: 366-374.
- 『水部賛錄』(1878-1889), 奎章閣 소장 筆寫本.
- 柳本藝(1830), 『漢京識略』, 서울대소장본, 樂泰益 역 (1981), 『漢京識略』, 서울:탐구당:109-172.
- 이유직(1992.7), “조선시대 조경제도의 법적측면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2):81-84.
- (1991), “『經國大典』을 통한 조선시대 조경관련제도의 고찰,” 『밀양전문대학』논문집: 25.
- 장동수(1994), “한국전통도시조경의 장소적 특성에 관한 연구-전통도시 金(呂巖, 林叡)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학위논문』:186-208.
- 『堂苑署賛錄』(1794), 奎章閣 소장 筆寫本.
- 전영옥·양병이(1994.7), “조선시대 한양에 조성된 官營의 蓮池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2(2):56-62.
- 丁若鏞(1818), 『牧民心書』, 노태준 역해(1993), 『신역 목민 심서』, 서울:홍신문화사:301-337.
-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1970, 影印本).
- 洪啓善 輯(1760), 『洛川事實』, 奎章閣 소장 筆寫本.